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- 변경 시행일: 2024년 04월 08일 (월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: 가입대상 확대 및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<생략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1.~① <생략> ② 가~나 <생략> 다. 가목, 나목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</p> <p>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^{주2)}을 충족하는 자 가.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“기준중위소득”이라 합니다)의 180% 이하일 것 나. ~다. <생략></p> <p>④ <생략> 2.~6. <생략></p> <p>제3조 신청 및 가입~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<생략></p> <p>제6조 이자 지급방법 1.~2. <생략> 3.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<신설></p> <p>제7조 우대금리~제8조 세율의 적용 <생략></p> <p>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.~① <생략> ②~바. <생략> <신설></p> <p>2.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1조 적용범위 <좌동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1.~① <좌동> ② 가~나 <좌동> 다. 가목, 나목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,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가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</p> <p>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^{주2)}을 충족하는 자 가.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“기준중위소득”이라 합니다)의 250% 이하일 것 나. ~다. <좌동></p> <p>④ <좌동> 2.~6. <좌동></p> <p>제3조 신청 및 가입~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<좌동></p> <p>제6조 이자 지급방법 1.~2. <좌동> 3.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<u>다만,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</u></p> <p>제7조 우대금리~제8조 세율의 적용 <좌동></p> <p>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.~① <생략> ②~바. <좌동> <u>사.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(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합니다)</u></p> <p>2.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<p>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</p>
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1.~2.<생략>
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	정부기여금 지급비율
총급여기준 ^{주10)}	종합소득		
<생략>			

주 10)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

3.~7. <생략>

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~제 13 조 기타

<생략>

부칙
<생략>
<신설>
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1.~2.<좌동>

개인소득		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	<u>정부기여금 지급비율^{주10)}</u>
총급여기준	종합소득		
<좌동>			

주 10) 제 2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% 적용

3.~7. <좌동>

제 11 조 정부기여금의 산정~제 13 조 기타

<좌동>

부칙
<좌동>

이 특약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. (단, 제 2 조제 1 항제 2 호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 신청한 고객부터 적용하며, 제 2 조제 1 항제 3 호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22일 신청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.)